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정의롭\*

### 〈요 약〉

학교폭력은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하고 있는 활동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 사회에서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은 시간이 흐를수록 상승하고 있으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감당하기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가 독점했던 경찰활동은 다양한 치안활동의 주체들과 협력하는 시스템으로 변해가고 있으며, 지역사회는 경찰이 감시하고 법을 집행해야 할 대상 또는 공간이 아니라 효율적인 경찰활동을 위한 협력자로 인식하고 있다. 경찰력의 한계 등의 측면에서 바라볼 때 민간경비의 활용은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와 함께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순찰활동 등 방법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또한 물리적·기계적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학교폭력, 범죄예방, 민간경비, 협력치안, 지역사회 경찰활동**

\*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수료

목 차
-----

- |   |
|---|
| I. 서 론<br>II. 이론적 배경<br>III. 학교폭력의 대응실태<br>IV. 민간경비의 활용방안<br>V. 결 론 |
|---|

## I. 서 론

2011년 12월 대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쪼그려 앉아 있는 모습이 찍힌 한 남자아이의 CCTV 영상은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과 안타까움을 던져주었다. 당시 14살에 불과했던 이 남학생은 학교 친구들로부터 약 2개월에 걸친 폭행과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였다. 혼자 괴로워하는 마지막 영상이 공개됨으로써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은 더욱 거세게 일어났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건이 비단 대구의 한 중학생에게만 국한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우리는 이러한 학교폭력이 더 이상 피해자와 가해자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며, 학교, 가정,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그 책임이 있는 사회적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 정부들어 학교폭력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악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규정되어 집중 관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그에 따라 수많은 대책들 또한 제시되어 왔지만 아직까지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만한 가시적인 성과는 드러나지 않은 듯하다(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박정선·이동원·박철현, 2011: 271).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지만 크게

등·학교 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위험요소와 학교 내에서의 학생간의 폭력, 그리고 외부인의 침입에 따른 학교 내에서의 범죄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중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간의 폭력을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발생 실태를 살펴보고,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하여 경찰이 학교라는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는 활동의 실태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현재 경찰에서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어떠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논해보고자 한다.

현대사회 구조의 다양성과 복잡성으로 인한 구성원들의 갈등 양상이 범죄와 관련된 때에는 치안서비스에 대해 국민들이 요구하는 기대수준은 더욱 더 상승할 수밖에 없고,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Grabosky, 1996: 1). 이에 국가가 독점하는 경찰활동이 다양한 치안활동 주체들과의 협력치안활동을 전개하도록 요구받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방안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민간경비라 할 수 있다(석정호, 2010: 67). 학교라는 장소적 특성을 감안하여 볼 때 민간경비를 활용한다는 것이 아직까지 국민 정서상 쉽게 용인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어만 가는 치안서비스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의 도움이라 할지라도 활용해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겠다.

## Ⅱ. 이론적 배경

###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일반적 용어이지만 명확하게 합의된 개념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폭력의 주체, 폭력의 장소, 폭력의 범위 등에 따라 그 모습이 다양하게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김준호 외, 2011: 272). 즉, 학생이라는 행위 주체의 측면에서 볼 것인지, 학교와 학교주변이라는 장소적 측면에서 바라 볼 것인지, 행위의 측면에서 형사법상의 폭력범죄와 재물범죄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일탈행위나 비행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고 두려움이나 고통을 야기하려는 의도로 행해지는 신체적·언어적 또는 정신적 공격이나 위협, 보다 힘이 센 자가 힘

이 약한 자를 짓누르는 힘의 불균형, 피해자에 의한 유발 내지는 유인의 부재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반복적 행위가 학교폭력의 중요한 구성요소(이윤호, 2004: 107)라는 견해도 있고, 타인에게 해를 입히기 위하여 힘, 무력, 언어적 공격, 상징적·심리적 강제 및 집단적 따돌림 등 다양한 수단을 사용하여 학교나 학교 주변에서 심리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김준호 외, 2011: 272-275)를 학교폭력이라고 규정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와 가해 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sup>1)</sup>를 말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주체는 반드시 학생일 필요가 없으며, 상기된 행위를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장소적 측면에서 바라보면 폭력행위가 학교 내에서 발생하거나 적어도 학교 주변의 장소에서 발생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특이할만한 점은 최근 스마트폰 활성화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주에 포함시켜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까지 학교폭력의 행위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외국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대응

학교폭력의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우리보다 일찍 깨닫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입안·시행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 경우 물리적인 폭력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사소한 괴롭힘을 방지하는 것에서부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신체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적 폭력과 살인 등의 행위는 사소한 괴롭힘<sup>2)</sup>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괴롭힘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낮은 수준의 학교폭력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방지하는 경우 높은 수준의 폭력으로 발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괴롭힘에 관심을 가지고, 훈련을 받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Whitted & Dupper, 2005). 이와 관련한 대표적 프로그램이 바로 학교폭력의 예방을 비롯한 학생의 선도 및 육성을 목표로 학교와 경찰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스쿨폴리스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스쿨폴리스 제도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1)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현재 미국에서는 경찰이 학교에서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Lawrence, 2007; Alida & Sozer, 2009). 경찰관이 학교에 파견되어 교육적, 교정적, 법집행관적 기능을 통합한 새로운 유형의 공무원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Brown, 2006: 593). 경찰은 학교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강화시키며,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나 G.R.E.A.T.(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일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범죄예방정보를 알려주고, 중요사건을 조사하며, 학교와 소년 사법기관과 연락을 담당하고 있다. 즉 스쿨폴리스는 학교 내 폭력 및 비행행동을 줄여 학교 내 안전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경찰-학교 파트너십의 일종인 것이다.

영국의 경우 School Liaison Officer(SLO)라는 학교경찰관이 있다. 이들은 학교의 안전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학교의 관계를 강화시키는 사회적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lida V. MERLO, M. Alper SOZER, 2009: 100). 학교 내에서 심각한 폭력 행위가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일반 경찰관이 수사를 맡게 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SLO가 이를 지원한다(최종술, 2006b: 173). 뉴질랜드 경찰의 청소년 교육업무인 YES<sup>3)</sup>와 같이 영미국가에서는 COP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김태진, 2007: 178).

2) 괴롭힘이란 학생 한 사람 또는 집단이 개인에게 가하는 신체적 자극이 없는 학대 또는 정신적 학대로, 이러한 희롱(harassment)와 학대(abuse)가 계속적인 패턴이 만들어지는 것을 말한다(Whitted, & Dupper, 2005).

3) Youth Education Service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모형은 학교폭력 신고접수·사건처리는 물론 가·피해학생 사후관리까지 학교와 협력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전담 처리하고 있는 모형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 생활지도교사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여 형사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또한 일선에서의 전문성과 경험을 토대로 소규모 학급단위로 학생 눈높이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한다(경찰백서 :100).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서울 구로경찰서와 구로고등학교 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및 청소년범죄를 근절하는 안으로 시행된 바 있는 형태이다(김순석, 2006 :344)

## 2) 학교 내 경찰관서의 설치

일정한 지역의 학교를 관할하는 일반경찰과 별개의 독립적인 학교경찰관서를 설치하는 형태로 보다 향상된 기동력을 보유하며 시민안전과 안보라는 동일한 목적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학교관련 경찰서비스를 담당하며, 민간 스텝 등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형태의 학교경찰제 모델이다. 대표적인 경우로 LA 학교경찰국(School Police Department)이 있다(최종술, 2006: 136). LA 학교경찰국은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과 더 나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948년 8월 창설되었다. LA 전 지역에 고등학교에는 경찰관 1명 이상, 중학교에는 경찰관 및 학교 담당 안전요원 1명 이상을 배치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범죄예방 등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처리하고 있다(김태진, 2007: 178).

## 3) 민간경비업체의 활용

민간경비업체와 협약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을 학교폭력 및 범죄예방에 활용하는 제도로써 중국 북경과 미국 뉴욕 및 워싱턴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는 교육시설에 대한 범죄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고 현실적으로도 문제에 접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력의 이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초등학교에서 대학 및 기타 교육시설에 이르기까지 각종 범죄문제가 외부 사회 못지않게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국가 및 사회 각 분야에서 민간경비를 활용하고 있다(최종술, 2006: 139).

중국의 경우 학교 선생님과 민간경비원이 공동으로 학생 및 학교시설물 등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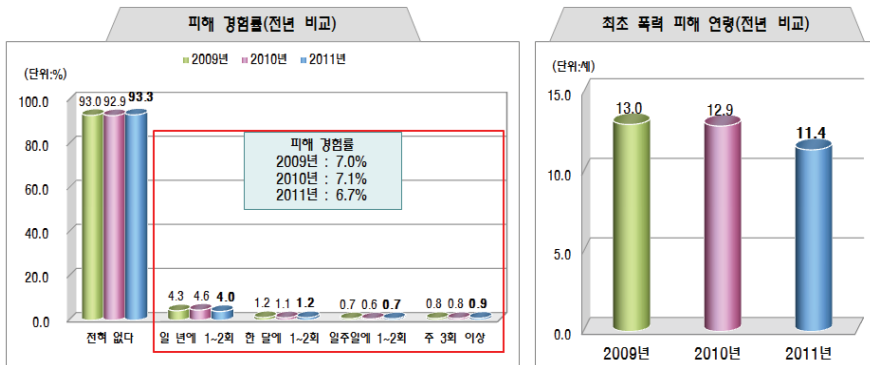


하여 24시간 교대로 관리를 실시하게 되며 또한 민간경비원은 학교폭력 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나 학교시설물 등의 위험 발생시 현장에서 제지한 후 경찰관서에 인계하여 처리한다(장석현, 2006: 346-347). 미국 뉴욕의 서퍽(Suffolk) 학교지역에서는 배움터지킴이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LA시의 경우 학생 등·하교시 교통정리원 업무를 민간경비회사에 위탁하고 있다(이상훈, 2007: 243-244).

### Ⅲ. 학교폭력의 대응실태

#### 1. 학교폭력의 실태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가 양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으나 질적으로 흉포화·집단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성가족부의 2011년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6.7%로 2010년에 비해 0.4%p 감소하였으며, 피해 횟수는 ‘일 년에 1-2회’(4.0%), ‘한 달에 1-2회’(1.2%)로 나타났다. 또한 최초 폭력 피해 연령으로는 11.4세로 전년 대비 1.5세 감소하였으며, 최근 3년 동안 최초 폭력 피해 연령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83〉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및 최초 피해연령

이러한 학교폭력의 주가해자로는 2009년과 2010년에는 주로 ‘학교 동료 또는 선후

배'에 해당하는 경우가 각각 55.9%와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2011년의 경우 '모르겠다'(42.6%)는 응답도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전혀 모르는 같은 또래' 3.6%, '모르겠다' 45.5%로 여성보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폭력 피해를 더 많이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학교폭력 주 가해자

(단위: %)	사례수 (명)	주 폭력 가해자						
		학교동료 또는 선후배	다른 학교 동료 /선후배	전혀 모르는 같은 또래	모르겠다	기타	무응답	
2009년	(1,502)	55.9	9.5	3.9	22.7	8.0	0.0	
2010년	(1,175)	73.5	9.6	7.6	6.0	3.1	0.2	
2011년	(2,013)	42.2	6.1	2.9	42.6	6.2	0.0	
성별	남성	(1,445)	39.4	5.7	3.6	45.5	5.8	0.0
	여성	(568)	49.1	7.3	0.9	35.2	7.4	0.0

학교폭력의 가해유형을 살펴보면 '심한 욕설/협박'이 10.8%, '폭행'은 6.8%, '돈이나 물건 빼앗음'은 4.6%, '집단 따돌림(왕따)'는 3.8%, 기타는 1.9%로 나타났다. 가해 경험률은 201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돈이나 물건 빼앗음'(1.0%p), '심한 욕설/협박'(0.8%p)은 다른 유형보다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 보면, 전반적으로 남성의 폭력 가해 경험률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폭행'(7.4%p)과 '심한 욕설/협박'(5.8%p)은 남성의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2〉 학교폭력 가해유형

(단위: %)	심한 욕설/협박	폭행	돈이나 물건 빼앗음	집단 따돌림(왕따)	기타	
2009년	6.5	4.7	3.0	2.6	0.8	
2010년	11.6	6.9	5.6	3.9	1.6	
2011년	10.8	6.8	4.6	3.8	1.9	
성별	남성	13.4	10.2	5.5	4.4	2.8
	여성	7.6	2.8	3.6	3.0	0.8

폭력을 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상대가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특별한 이유 없음'(31.2%), '기타'(10.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특별한 이유 없음’(각각 35.9%, 19.4%), ‘부추기는 분위기에 휩싸여 우발적’(각각 4.1%, 2.1%)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 폭력 가해 이유

(단위: %)	사례수 (명)	특별한 이유 없어	상대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 힘이 강하다걸 보여주기 위해서	용돈이 부족해서 돈을 얻기 위해	부추기는 분위기에 우발적으로	다른 사람이 시켜서	기타	무응답	
2009년	(1,310)	27.7	47.1	3.3	4.3	5.5	1.5	12.6	0.0	
2010년	(848)	17.9	32.7	2.9	2.9	3.7	1.3	8.8	29.8	
2011년	(493)	31.2	47.1	1.9	4.0	3.5	1.8	10.5	0.0	
성별	남성	(362)	35.9	45.3	1.3	2.8	4.1	1.9	8.8	0.0
	여성	(131)	19.4	51.5	3.4	7.1	2.1	1.6	15.0	0.0

이러한 학교폭력 피해 경험 후에 알린 대상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32.5%)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친구에게 알림’(26.1%), ‘가족에게 알림’(21.1%), ‘선생님께 알림’(1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폭력 피해 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알렸으며 특히 ‘친구에게 알림’의 비율이 45.5%로 남성(18.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 학교폭력 피해 후 알린 대상

(단위: %)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	가족에게 알림	선생님께 알림	친구에게 알림	상담실 전문기관 에 알림	경찰에 신고	기타	무응답	
2009년	33.2	23.1	15.7	27.0	3.9	4.7	11.6	0.0	
2010년	30.5	32.2	24.4	34.2	3.6	2.2	3.3	1.1	
2011년	32.5	21.1	19.3	26.1	3.7	2.6	13.5	0.0	
성별	남성	38.4	18.5	17.9	18.1	2.6	2.8	14.0	0.0
	여성	18.2	27.2	22.7	45.5	6.5	1.9	12.1	0.0

여기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2010년에 비해 폭력 피해 후 ‘가족에게 알림’(11.1%p), ‘선생님께 알림’(5.1%p), ‘친구에게 알림’(8.1%p)은 감소한 반면, ‘경찰에 신고’(0.4%p),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음’(2.0%p), ‘기타’(10.2%p)가 증가한 점이다. 이는 신고로 인한 보복이 두려워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비율이 증가한 반면, 경찰에게 신고했다는 비율이 미미하지만 증가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경찰이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운영 중인 경찰에서 하는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 2.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현황

경찰청 통계상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만 5천명 수준을 유지하다 2011년 21,957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23,877명으로 8.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2012: 97).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지방청별로 학교폭력 검거현황을 나타낸 <표 6>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은 2008년 이후 3년간 평균 25,100여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한 인원에 비해 구속된 청소년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 범죄자는 신체 발달에 비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기 쉬우며 주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청소년에 대한 구속을 지양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표 5> 경찰의 학교폭력 검거 현황

구분 (명)	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7월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검거	구속
계	121,195	797	11,412	166	21,710	104	25,301	184	24,825	131	25,175	143	12,772	69
서울	24,128	111	2,111	15	5,756	14	4,452	17	5,173	31	4,506	20	2,130	14
부산	16,328	109	420	17	1,803	18	4,399	29	3,548	12	4,292	29	1,866	4
대구	6,064	40	550	14	1,063	6	1,266	0	1,311	6	1,241	11	633	3
인천	5,458	41	550	13	848	0	1,279	22	1,084	1	1,016	5	681	0
광주	4,282	30	-	-	379	8	1,119	5	774	12	1,358	5	652	0
대전	3,111	9	-	-	178	0	609	3	437	1	1186	4	701	1
울산	2,131	6	343	2	325	3	371	0	399	1	436	0	257	0
경기	26,832	172	2,506	38	5,213	22	5,903	39	5,003	18	5,385	42	2,822	13
강원	3,387	20	455	6	685	2	485	7	621	3	673	2	468	0

충북	3,303	15	434	4	1,030	10	496	0	526	0	601	1	216	0
충남	3,826	43	643	10	788	5	548	13	747	7	645	1	455	7
전북	3,609	18	611	5	576	0	631	0	613	5	787	5	391	3
전남	5,552	44	1,681	10	836	5	891	9	996	15	837	0	311	5
경북	5,766	52	484	18	778	6	1,084	7	1,991	8	911	13	518	0
경남	5,806	83	470	12	1,213	3	1,303	33	1,258	11	985	5	577	19
제주	1,612	4	154	2	239	2	465	0	344	0	316	0	94	0

※ 광주·대전청은 '07. 7. 2 개청하여 통계 관리 중

따라서 경찰에서는 학교폭력의 특성을 감안하여 청소년들이 일시적인 호기심이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범죄자로 전락하거나 재차 비행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범죄예방교실 등 청소년 선도·보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 조사과정에 범죄 심리사 등 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청소년의 특성과 환경에 맞는 과학적 조사 및 처우개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울러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 3.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

오늘날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학교 주도적으로 가정, 지역사회 및 국가기관 등과 서로 연대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으나, 사실상 학교에서는 이미지 실추와 상급기관의 질책 등을 우려하여 쉬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학교폭력 문제를 더욱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게 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개입을 하도록 촉발하게 되었다. 이를 기초로 경찰에서는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운영, 집중단속기간 운영, 학교폭력예방교육의 강화, 교내 CCTV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장양식, 2009: 29-30).

#### 1) 범죄예방교실 운영

범죄예방교실이란 각급 경찰관서별로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요령과 폭력 피해시 조치요령 등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고, 시청

각 교재 등을 활용하여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폐해를 인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범죄예방교실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6〉 최근 5년간 범죄예방교실 운영현황

구 분	학 교 별		교육실시인원		강사진(명)			실시 횟수
	초등학교	중·고교	초등학교	중·고교	경찰 서장	간부	전담 강사등	
'07년	4,834	6,536	1,687,488	3,223,434	223	4,743	5,699	11,370
'08년	8,543	7,527	3,070,096	3,490,386	200	5,442	8,731	16,408
'09년	6,952	6,281	2,261,767	2,836,096	151	5,107	7,270	13,239
'10년	7,084	7,895	2,287,375	3,242,259	169	4,977	8,579	15,060
'11. 7월	3,684	4,104	1,183,238	1,624,987	99	2,644	4,069	7,536

## 2) 사랑의 교실 운영

사랑의 교실은 비행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종합사회복지관 등과 협조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랑의 교실은 비행·불량소년, 중·고등학교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해와 역할극·미술치료 등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한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7〉 최근 5년간 사랑의 교실 운영 현황

구 분	참가 인원	대 상 별						비 행 내 용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근로 소년	재수 생	무직 기타	절도	폭력	성 범죄	약물	기타
'07년	5,883	-	3,341	2,181	2	8	351	2,506	2,484	28	38	827
'08년	7,630	-	4,668	2,495	6	9	452	2,515	4,267	19	43	786
'09년	6,837	164	4,060	2,310	9	4	290	2,349	2,151	35	14	2,288
'10년	17,877	568	8,872	7,084	10	13	1,330	6,257	6,645	139	310	4,526
'11. 7월	4,919	46	2,379	2,126	2	26	340	1,829	2,354	43	61	632

### 3)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

경찰은 2005년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력 등 학교폭력 관련 강력사건을 계기로 교육부 등 관련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수립·추진하여 왔다(2011. 경찰청: 121).

특히 학교폭력이 음성화된 원인이 가해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기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따라 '05년부터 6개 부처와 합동('10년부터 8개 부처)<sup>4)</sup>하여 매일 신학기초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는 상·하반기 각각 2개월씩 운영하고 있다. 이는 자진신고한 경미초범 가해학생을 선도조건부 불입건하고, 재비행을 방지하며 피해신고 학생의 비밀보장과 함께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는 등 보호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신고기간의 운영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8〉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 운영현황

구분	기 간	가해학생 처리합계	자진신고(명)				단속 및 피해신고(명)			서클 해체
			계	불입건	입건	소년부 송치 등	계	입건	소년부 송치 등	
'07년	3.12-6.11	14,266	7,059	6,471	448	140	7,207	6,387	820	211
'08년	6.2-8.31	13,614	7,515	6,901	498	116	6,099	5,041	1,058	225
'09년	3.16-6.15	11,579	5,682	4,348	931	403	5,897	5,074	823	126
'10년	3.15-5.14	6,472	3,504	3,076	335	93	2,968	2,445	523	43
	9.1-10.31	5,532	3,108	2,794	243	71	2,424	2,107	317	45
'11년	3.14-5.15	5,466	3,205	2,933	206	66	2,261	1,882	379	25

이러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의 결과 피해학생들이 경미한 피해에도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등 학교폭력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반성하는 취지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건부 불입건 제도'가 정착되었다. 또한,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이었던 폭력서클이 자진해체를 통해 대부분 와해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경찰백서, 2011: 121).

4) 8개 부처 : 경찰청,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 4)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이란 매학기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폭력서클을 해체하고, 미신고한 가해학생 등을 대상으로 가시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의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운영현황

구분	기 간	가해학생 처리합계	조치			서클 해체
			구속	불구속	소년부 송치 등	
'07년	3.12-6.11	7,207	128	6,259	820	211
'08년	9.1-10.31	4,128	66	3,368	694	32
'09년	9.1-10.3	6,214	55	5,029	1,130	40
'10년	5.17-6.27	3,120	30	2,450	640	11
	11.1-12.12	2,257	7	1,855	395	5
'11년	5.16-6.26	2,478	32	2,051	395	2

2007년부터 2011년 학교폭력 집중단속 기간 동안 단속한 가해학생의 수는 25,404명이다. 이 중 구속 조치된 학생은 318명, 불구속 조치된 학생은 21,012명, 소년부 송치 등은 4,074명이며, 해체된 서클은 총 301개로 나타났다.

#### 5) 학교전담경찰관

경찰청에서는 학교폭력 대응에 대한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청소년분야 전문가를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SPO)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예방교육, 가·피해학생 상담 및 선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석 등 경찰과 학교 사이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까지 학교전담경찰관은 전국 681명(1인당 16.7개 학교 담당)이 활동하고 있으며 보다 효과적인 대응과 역할수행을 위하여 향후 2016년까지 1,078명(1인당 10개 학교 담당)으로 증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채용 대상자로서 청소년 심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위기 청소년에 대한 원활한 상담과 교육이 가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는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3년 서울시 교육청이 700여 개 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5,845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전담경찰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에 대하여 ‘도움이 된다’라고 응답한 의견이 8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4. 기타 학교폭력 구조 활동

현재 학교 내·외에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경찰의 피해자에 대한 구조책으로는 피해자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경찰조사과정에서의 ‘여성조사관제 도입’과 조사과정의 CCTV설치,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ONE-STOP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 학교폭력근절대책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내놓은 중요한 정책으로 학교폭력 신고상담 대표전화 117이 있다. 117신고센터는 기존 지방청별로 시행하던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가 합동으로 팀을 구성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모든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뒤 경미한 사안은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로 보내고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해 조치한다. 이어 지원센터의 상담·의료·경찰·사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팀에서 학생상담·분석·조치방안을 마련한 뒤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통보하도록 구성되어 있다(강욱·정석진, 2012: 104). 그러나 이러한 117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센터에 투입된 상담인원은 매우 적으며, 상담 내용도 전문적이지 못하고, 인터넷이나 전화로 상담원과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sup>5)</sup>

배움터지킴이란 ‘학교 및 배우는 곳’을 의미하는 배움터와 ‘학교폭력 및 외부의 강제적인 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는 사람’을 뜻하는 지킴이를 합한 용어이다(정귀영, 2011: 115). 이러한 배움터지킴이는 스쿨폴리스라고도 하며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진국에서 청소년 비행 및 학교폭력에 관한 대처방안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경찰이 교육청과 함께 협력·대처해 온 제도라 할 수 있다. 퇴직교원과 퇴직경찰관 외에 청소년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 하에 현지 경찰관의 신분인 아닌 일반인을 유사경찰관 형태로 임명하여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역할 및 임무를 수행케 하는 제도이다. 이들은 학교의 후미진 곳, 학교 주변 사각지대 그리고 교통안전지도 및 학교 주변 유해업소 정화활동 등 순찰활동을 하며, 학생

5) 학교폭력 신고상담 전화 117, 그 실체는?(<http://www.youtube.com/watch?v=fON7jhCC-4I>)

·교사·학부모와 학교폭력 및 진로상담 등 수행한다(신현기·김용화, 2005: 15). 이는 시민연계의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의 형태로 현직 경찰관이 학교 내에서의 활동에 제한을 받는 경우, 또는 경찰의 학내 개입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강한 경우에 활용 가능한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빠른 곳은 1964년 로스엔젤레스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영국의 경우도 1974년 런던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캐나다는 이보다 앞선 1957년부터 토론토에서 시작하였고 뉴질랜드 또한 1974년부터 시행하였다. 이렇듯 이 제도가 도입 된지 50년 여가 된 현재 어느 정도는 선진국에서 검증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김태복·이영석, 2011: 307).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스쿨폴리스를 배움터지킴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국의 경우들과 달리 전직 경찰 등 전문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학교 폭력을 전담케 한다.<sup>6)</sup> 이는 퇴직교원 및 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가 교내·외 학교폭력 예방 및 합동 교외지도를 하는 제도를 말한다(정귀영, 2011: 115).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4월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현재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 IV. 민간경비의 활용방안

### 1. 민간경비원에 대한 임무 및 권한 부여

민간경비원이 학교폭력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에 따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의 활용과 관련하여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현행 법률로는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들 수 있다.

현행 「경비업법」에서는 제2조에 경비업의 범위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및 특수경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 중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민간경비의 활동은 시설경비, 신변보호 및 기계경비 등이 해당한다.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6)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전문업체와 협업을 통해 운영하는 ‘학교보안관’이라는 명칭으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였으나 예산의 문제로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학교장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배움터지킴이 제도로 전환하기로 했다([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8/2012011800168.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2/01/18/2012011800168.html))

서 학교라는 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발생에 학교폭력을 포함시킬 수 있다. 또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때 신변보호의 기능도 가능하다. 기계경비는 시설경비와 유사하나 시설경비를 하는데 있어 각종 기계장치를 사용한다는 데에 차이가 있다. 「청원경찰법」에서는 학교 등 육영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경영자가 경비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무기휴대가 가능한 청원경찰중심의 학교 안전운영은 적절치 않으며 예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경비업의 활용이 더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교에 대한 경비는 현재의 위해요소 및 위협요인을 판단·분석하여 구체화된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도발적인 사고, 자연재해, 전반적인 위험잠재력 등 학교 내의 안전성에 위협을 끼치는 제반 요소를 분석하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경우 주로 시설에 대한 경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사람에 대한 경비원의 권한 행사에는 일정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를 위해 체포권 등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특별경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형법(제830조 제7항)에 따르면 사우스캘리포니아 대학의 캠퍼스 경찰은 LA경찰국과의 일정한 MOU 체결을 전제로 체포권 등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이상훈, 2007: 246).

## 2.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학교폭력이 대부분 학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해서는 학교와 민간경비, 그리고 경찰의 협력 및 연계가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실태 파악 및 신고, 범죄예방 교육 등 경찰과 민간경비가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대책에 있어서 학교와의 유기적인 협력 없이는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김혁, 190).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은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교내의 위험한 사각지대 방범활동 및 등·하교시 순찰활동을 위하여 학교와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즉 민간경비원은 학교 선생님 및 학교폭력 담당 선생님 등과 만나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갈취, 성폭행, 떠돌림, 감금 등 범죄발생 현황은 물론 기타 학교주변과 등·하교시 범죄발생 취약장소 등 구체적인 학교 방범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즉 학교 내에 출입하는 외부인을 관리하고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순찰활동의 실시와 사건발생시 학생들의 자문역할을 수행하며, 폭력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도교사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 더 큰 사고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폭력 및 집단 따돌림에 대한 피해 학생과 상담 또는 교외지도를 실시한다.

이러한 학교와 민간경비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정보교환 체제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장, 교감, 학생주임, 담임선생님 그리고 민간경비원이 주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학교폭력의 종류, 시간, 수법 그리고 범행 특징 등에 관한 범죄정보의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학부형 및 경찰관 등을 초청하여 민간경비원의 활동과 학교폭력예방 등을 설명하여 잘못된 부분은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와 민간경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고취시키고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공동 노력으로 범죄예방과 관련되는 모든 민간경비의 노하우를 학교에 배분하여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3. 물리적·기계적 경비시스템의 도입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은 범죄예방활동과 관련해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적인 시각과 다각적인 접근을 의미하고, 특정행동에 해당하는 범행과 그 기회를 억제하거나 유인하기 위한 범죄예방 정책이다(이정덕·임유석, 2000: 225). 즉,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학교 내 시설과 학교 울타리 등 공간적 디자인을 통하여 학교폭력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CPTED와 민간경비는 범죄의 사전적 예방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CPTED의 주요 요소인 자연적 감시, 접근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 및 보수의 원칙은 민간경비의 보충적인 업무가 절실히 필요하다. 민간경비의 인력경비와 기계경비가 CPTED의 주요 요소와 결합을 하게 되면 더욱 더 범죄예방활동에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교내의 어두운 공간, 안전하지 않은 공간 등 사각지대에서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므로 학교 건물의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CPTED의 효과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합한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체계 표준, 인증요건 표준, 자격인증기관의 인증체계표준, 심사평가표준 등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제정하여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야 한다(이세환, 2014: 101).

## V. 결 론

학교폭력은 그 발생 원인이 무엇이다라고 단정 짓기 힘든 문제이며 또한 더 이상 학생들 사이의 사소한 문젯거리가 아니다. 이는 사회 환경, 가정교육의 부재, 교사의 지도력 저하, 학업성취도 편중으로 인한 교육의 문제 등 결국 우리 가정, 학교,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현 정부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4대악의 하나로서 규정을 하고 대처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학교전담경찰관, 범죄예방교실, 배움터지킴이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폭력 신고 접수를 위한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및 학교폭력 자진신고기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학교 내에서의 폭력예방을 위해 일반 경찰권이 상시 발동될 수 있다면 매우 효과적일 것이나 경찰의 한정된 자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민간경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민간경비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과거 경찰이 수행해 왔던 치안업무의 많은 부분을 이미 민간경비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는 과거 국가의 고유기능으로만 여겼던 치안유지가 민간으로 이양되어 가는 현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이제 민간경비제도는 경찰의 보조 내지 보완적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김용근, 2012: 272-273). 그러나 학교폭력 문제에 민간경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민간경비원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임무 및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민간경비는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범죄에 관하여 집행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민간경비는 범죄 수사를 위한 활동이 아니라 범죄 예방 측면에서 활동을 한다.

학교 내에서의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에서의 강제력 행사가 가능한 특별경찰권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체 및 민간경비원의 질적 향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와 민간경비간의 정보교환이 필요하다. 학교와 민간경비간의 주기적인 만남을 통하여 학교에서는 근래에 발생한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갈취, 성폭행, 따돌림 등 학교범죄에 관하여 모든 범죄발생 현황을 민간경비에 제공해야하며, 민간경비는 그 동안의 노하우를 학교 측에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학생들의 범죄 기회를 차단하고, 범죄예방에 힘써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예방센터를 학교와 민간경비간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상호간의 협력증진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다.

셋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민간경비의 활용이다. 기존의 많은 학교는 높은 학교 울타리, 교내의 어두운 공간, 안전하지 않은 공간 등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후된 학교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구축하여 민간경비의 인력경비와 기계경비를 활용하여 학교폭력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민간경비는 우수한 인력과 오랜 경험으로 쌓여진 노하우 등으로 학교폭력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학생들은 인생의 한번뿐인 학창시절을 학교폭력에 시달리지 않고 친구들과 넓은 운동장을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학교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교육이 안전하고 올바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 욱·정석진. (2012),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회복적 정의와 응보적 정의의 관점에서”, 2012년도 대한범죄학회·경찰대학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 경찰청. (2011), 「경찰백서」, 경찰청.
- \_\_\_\_\_. (2012a), “학교폭력 사건 현황-2006년 이후 시도별 학교폭력 발생 현황”, 국회제출자료.
- \_\_\_\_\_. (2012b), “최근 5년간 학교폭력범죄 관련 방지 대책 및 성과”, 국회제출자료.
- \_\_\_\_\_. (2012c), 「경찰백서」, 경찰청.
-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2012. 2. 6.
- 김순식. (2006), “한국의 학교경찰제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7: 323-368.
- 김용근. (2012),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연구”, 경찰학논총, 7(2): 269-284.
- 김원중. (2011), “학교안전에 관한 경찰의 법집행 검토”, 토지공법연구, 53: 211-234.
-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박정선·이동원·박철현. (2011), 「청소년비행론(제2판)」, 청목출판사.
- 김태복·이영석. (2011), “학교 안전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7(4): 305-315.
- 김태진. (200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상”,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169-192.
- 김 혁. (2013),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2): 261-299.
- 석청호. (2010), “협력치안체제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4: 67-90.
- 신현기·김용화. (2005), “학교경찰(School Police)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4(2): 3-29.
-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 종합 실태조사 보고서」, 여성가족부.
- 이우호. (2004),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삼경문화사.
- 이상훈. (2007), “경찰업무 민영화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 230-259.
- 이세환. (2014), “학교안전망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8: 83-107.
- 이정덕·임유석. (2000), “민간경비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기법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 29: 225-249.

- 장석현. (2006), “학교경찰제도의 도입모델에 관한 연구-배움터지킴이를 중심으로”, 치안논  
총, 22: 331-449
- 장양식. (2009), “학교폭력과 경찰 대응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정귀영. (2011),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제도의 활성화 방안”, 한국사회안전학회지,  
7(1): 109-133.
- 최중술. (2006), “한국적 school police 제도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1: 131-161.
- \_\_\_\_\_. (2006b),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3(1): 159-204.
- 홍정선. (2010),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 2. 국외문헌

- Alida V. M., & SOZER, M. A. (2009), “Police, youth, and crime prevention: examining the best  
practices-polis, Genclic ve Suc Onleme: En İyi Ornekler”, *Turkish Journal of Police Studies*,  
12(4): 95-118.
- Grabosky, P. N. (1996), *“The future of crime control”*,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 Lawrence, R. (2007), *“School crime and juvenile justic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hitted, K. S., & Dupper, D. R. (2005), “Best Practices for Preventing or Reducing Bullying  
in schools”, *Children Schools*, 27(3): 167-175.



【Abstract】

##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Private Security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Jung, Eui-Lom

School violence is now considered not only as a problem for a victim and a offender themselves, but also as a social problem that requires responsibilities of school, home, society, and even nation. Crimes and risk factors are various inside and outside of school. In terms of solving those problems, this study examines the actual condition of school violence among students.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what efforts are conducted by police to establish a safe school environment and the problems that derive from it. Futhermo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ways of using the private security with regard to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In this society, the expectation of security service from the police is increased as time passed. However, police has limited resources, thus it is beyond their practice. Policing has changed from being monopolized by government to cooperating with various security agents. Community is not considered as the subject for enforcing the law anymore, but as the cooperator for effective policing. With regard to the limitation of police force, using the private security is an effective alternative. Therefore, it is required that private security should be assigned legal authority and shared information with schools in order to patrol the blind spot. Finally, school violence prevention efforts should be conducted by applying physical and electronic security.

**Key words** : school violence, crime prevention, private security,  
cooperation policing, community policing